

정 관 변 경 허 가 서

사단법인 대한미용사회 정관을 「민법」 제42조와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허가 합니다.

2021년 11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사단법인 대한미용사회 일부개정 정관

사단법인 대한미용사회 정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Cosmetologists”를 “Beauticians”로 한다.

제4조 제1항에 17호, 18호, 1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7. 국가자격 검정 사무 및 국가 위임 사무에 관한 사항
18. 봉사활동 및 봉사활동 지원등에 관한 사항
19. 소상공인 관련 사업에 관한 사항

제4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제17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세부사항은 관련 규정으로 정한다.

제5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② 법인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정부기관 간의 공동업무를 처리하거나 수행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및 광역시 단위로 관할 내 각 지회장을 회원으로 하는 협의회

를 두며, 행사 및 업무 등을 위하여 특별한 구성이 필요한 경우에 관한 내용은
각급 협의회 운영 규정으로 정한다.

제6조 중 “광역시의”를 “광역시·특례시의”로 한다.

제8조 제1항 3호 “분쟁조정위원회”를 “고충처리위원회”로 한다.

제8조 제1항 11호 “두피미용위원회”를 “두피모발위원회”로 한다.

제8조 제1항 14호 “미용미술위원회”를 “헤어스케치위원회”로 한다.

제8조 제1항에 16호, 17호, 18호, 19호, 20호, 2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6. 미용예술창작위원회(환타지 헤어스타일)
17. 국제미용위원회
18. 헤어아트위원회
19. 고전머리위원회
20. 미용장위원회
21. 정책자문대외협력위원회

제8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본회의 특별한 상황에 따라 위원회가 필요한 경우 이사회 의결로 설치할 수 있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 회장은 분야별 또는 목적별로 위원회를 사전에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회장은 이사회의 추인을 받아야 한다.

제11조 제2항 “하여야 한다”를 “하여야 하며, 입회비 및 입회에 따른 구체적인 내용은 회비징수 및 회원관리규정에 정한다.”로 한다.

제17조 제3항 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상임위원 12명 이내(지회장, 부지회장 포함)
단, 회원수가 500명 이상인 지회의 경우 상임위원을 20명 이내로 한다.

제17조 제4항 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상임위원 12명 이내(지부장, 부지부장 포함)
단, 회원수가 500명 이상인 지부의 경우 상무위원을 20명 이내로 한다.

제17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⑤ 도서 산간벽지를 포함하여, 지회, 지부의 기능을 상실하여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지회 및 지부의 경우 중앙회장은 지회장, 지부장을 임명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임원선거규정에 정한다.

제23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임원의 임기는 다음과 같다.

- 1. 중앙회

- 가. 회장 및 부회장, 이사 : 4년

- 2. 도지회 및 직할지회

- 가. 지회장 및 부지회장, 상임위원 : 4년

- 3. 지부

- 가. 지부장 및 부지부장, 상무위원 : 4년

- 4. 감사

- 가. 중앙회, 도지회, 직할지회, 지부 : 2년

- 5. 각 임원 중 중앙회장, 지회장, 지부장은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으며, 그 외 임원은 제한하지 않는다.

제24조 제1항 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3. 도지회장의 결원이 발생한 때에는 도지회 임원과 산하 지부장 전원이 포함된 회의에서 보선한다.

제24조 제1항 3-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3-1. 도지회장을 제외한 임원의 결원이 발생한 때에는 당해 지회 상임위원회에서 보선한다.

제24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보선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 방법에 대하여는 임원선거규정에 정한다.

제34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국가적 비상사태, 전염병 및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서면총회로 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 다만, 중앙회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36조 제1항 중 “재적구성원 과반수 출석으로”를 “의사정족수에 따라 개최하고 참석 구성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로 한다.

제36조의 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6조의 1(의사정족수) 각급 총회의 의사정족수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중앙회, 도지회는 재적구성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한다.
2. 재적구성원이 100명 이하 지회·지부는 재적구성원 1/3이상 참석으로 개최한다.
3. 재적구성원이 100명 이상~300명 이하 지회·지부는 재적구성원 1/4이상 참석으로 개최한다.
4. 재적구성원이 300명 이상 지회·지부는 재적구성원 1/5이상 참석으로 개최한다.
5. 중앙회, 도지회를 제외하고 위임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37조 제1항 중 “회원 또는 대의원은”을 “대의원은”으로 한다.

제54조 제3항 중 “3년”을 “4년”으로 한다.

제56조 중 “이사회 의결을 얻어 중앙회장이 표창한다”를 “중앙회장이 표창하며 관련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로 한다.

제57조 제1항 중 “회원”을 “회원 또는 직원”으로 한다.

제60조 제1항 1호 중 “임원”을 “임원과 선거관리위원”으로 한다.

제60조 제1항 2호 중 “임원의”를 “임원과 선거관리위원의”로 한다.

제61조의 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61조의 1(재심청원) ① 회원으로 징계를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하여 청구할 수 있다.
② 재심 청원에 해당하는 사유 및 신청 절차·방법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61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61조의 2(징계 사면·감경 및 복권) ① 중앙회장은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징계의 사면·감경 또는 복권을 명할 수 있다.
② 징계의 사면·감경 및 복권에 관한 사항은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부 칙

(시행일) 본 정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정관개정(안) 신·구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명칭) 이 법인은“사단법인 대한미용사회”(이하“법인”이라 한다)라 하고 외국에 대하여는 Korean <u>Cosmetologists' Association</u>(약칭 KOCOA)이라 한다.</p> <p>제4조(사업) 법인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p> <p>1.~16.(생략)</p> <p>17.<신설></p> <p>18.<신설></p> <p>19.<신설></p> <p>② <신설></p> <p>제5조(구성) ①(생략)</p> <p>②법인은 <u>서울특별시 및 광역시 단위로 관할 내 각 지회장을 회원으로 하는 협의회를 둔다.</u></p> <p>③~④(생략)</p>	<p>제1조(명칭) ----- ----- ----- Korean <u>Beauticians Association</u>(약칭KOBA)이라 한다.</p> <p>제4조(사업) ① 법인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p> <p>1.~16.(현행과 같음)</p> <p><u>17.국가자격 검정 사무 및 국가 위임 사무에 관한 사항</u></p> <p><u>18.봉사활동 및 봉사활동 지원등에 관한 사항</u></p> <p><u>19.소상공인 관련 사업에 관한 사항</u></p> <p><u>②제17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세부사항은 관련 규정으로 정한다.</u></p> <p>제5조(구성) ①(현행과 같음)</p> <p>②법인은 <u>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정부기관 간의 공동업무를 처리하거나 수행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및 광역시 단위로 관할 내 각 지회장을 회원으로 하는 협의회를 두며, 행사 및 업무 등을 위하여 특별한 구성이 필요한 경우에 관한 내용은 각급 협의회 운영 규정으로 정한다.</u></p> <p>③~④(현행과 같음)</p>

현행	개정안
<p>제6조(지회) ① 중앙회 산하 직할지회는 서울특별시·<u>광역시</u>의 자치구별로 각 1개씩 둔다.</p> <p>②~③(생략)</p>	<p>제6조(지회) ①----- -----<u>광역시·특례시</u>의 자치구별로 각 1개씩 둔다.</p> <p>②~③(현행과 같음)</p>
<p>제8조(위원회) ①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위원회를 둘 수 있다.</p> <p>1.~ 2.(생략)</p> <p><u>3.분쟁조정위원회</u></p> <p>4.~ 10.(생략)</p> <p><u>11.두피미용위원회</u></p> <p>12.~ 13.(생략)</p> <p><u>14.미용미술위원회</u></p> <p>15.(생략)</p> <p><u>16.<신설></u></p> <p><u>17.<신설></u></p> <p><u>18.<신설></u></p> <p><u>19.<신설></u></p> <p><u>20.<신설></u></p> <p><u>21.<신설></u></p> <p>② (생략)</p> <p>③ <u><신설></u></p>	<p>제8조(위원회) ①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위원회를 둘 수 있다.</p> <p>1.~ 2.(현행과 같음)</p> <p><u>3.고층처리위원회</u></p> <p>4.~ 10.(현행과 같음)</p> <p><u>11.두피모발위원회</u></p> <p>12.~ 13.(현행과 같음)</p> <p><u>14.헤어스케치위원회</u></p> <p>15.(현행과 같음)</p> <p><u>16.미용예술 창작위원회(환타지 헤어스타일)</u></p> <p><u>17.국제미용위원회</u></p> <p><u>18.헤어아트위원회</u></p> <p><u>19.고전머리위원회</u></p> <p><u>20.미용장위원회</u></p> <p><u>21.정책자문대의협력위원회</u></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u>본회의 특별한 상황에 따라 위원회가 필요한 경우 이사회 의결로 설치할 수 있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 회장은 분야별 또는 목적별로 위원회를 사전에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회장은 이사회의 추인을 받아야 한다.</u></p>
<p>제11조(입회절차) ①(생략)</p> <p>② 회원으로 입회할 때에는 입회금을 납부하여야 한다.</p>	<p>제11조(지회) ①(현행과 같음)</p> <p>②----- --<u>하여야 하며, 입회비 및 입회에 따른 구체</u></p>

현행	개정안
<p>제17조(임원) ①~②(생략) ③ 직할지회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2.(생략) 3. 상임위원 12명 이내(지회장, 부지회장 포함) 4.(생략) ④ 지부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2.(생략) 3. 상무위원 12명 이내(지부장, 부지부장 포함) 4.(생략) ⑤ <신설></p>	<p><u>적인 내용은 회비징수 및 회원관리규정에 정한다.</u> 제17조(임원) ①~②(현행과 같음) ③(현행과 같음) 1.~2.(현행과 같음) 3.----- ---- <u>단, 회원수가 500명이상인 지회의 경우 상임위원을 20명 이내로 한다.</u> 4.(현행과 같음) ④(현행과 같음) 1.~2.(현행과 같음) 3.----- ----- <u>단, 회원수가 500명이상인 지부의 경우 상무위원을 20명 이내로 한다.</u> 4.(현행과 같음) ⑤ <u>도서 산간벽지를 포함하여 지회, 지부의 기능을 상실하여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지회 및 지부의 경우 중앙회장은 지회장, 지부장을 임명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임원선거규정에 정한다.</u></p>
<p>제23조(임원의 임기)① <u>중앙회 이사(중앙회장, 부회장 포함)·도지회 및 직할지회 상임위원(지회장, 부지회장 포함)·지부 상무위원(지부장, 부지부장 포함)·구역회 임원의 임기는 3년, 중앙회 감사·도지회 및 직할지회 감사·지부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u></p>	<p>제23조(임원의 임기)① <u>임원의 임기는 다음과 같다.</u> 1. <u>중앙회</u> 가. <u>회장 및 부회장, 이사 : 4년</u> 2. <u>도지회 및 직할지회</u> 가. <u>지회장 및 부지회장 상임위원 : 4년</u> 3. <u>지부</u></p>

현행	개정안
<p>②~③(생략)</p> <p>제24조(임원의 보선) ①(생략) 1.~2.(생략) 3.<u>도지회 및 직할지회 임원의 결원이 발생한 때에는 당해 지회 상임위원회에서 보선한다.</u> 3-1. <신설></p> <p>4.(생략) ②~③(생략) ④<신설></p> <p>제34조(총회소집의 특례) ①~②(생략) ③<신설></p> <p>제36조(의결정족수) ①총회는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u>재적구성원 과반수 출석으로</u> 개최하고 출석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p>제36조의 1(의사정족수) <신설></p>	<p>가.지부장및부지부장 상무위원: 4년</p> <p>4.감사 가.중앙회,도지회,직할지회,지부: 2년</p> <p>5.각 임원중 중앙회장, 지회장, 지부장은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으며, 그 외 임원은 제한하지 않는다.</p> <p>②~③(현행과 같음)</p> <p>제24조(임원의 보선) ①(현행과 같음) 1.~2.(현행과 같음) 3.<u>도지회장의 결원이 발생한 때에는 도지회 임원과 산하 지부장 전원이 포함된 회의에서 보선한다.</u> 3-1.<u>도지회장을 제외한 임원의 결원이 발생한 때에는 당해 지회 상임위원회에서 보선한다.</u> 4.(현행과 같음) ②~③(현행과 같음) ④<u>보선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방법에 대하여는 임원선거규정에 정한다.</u></p> <p>제34조(총회소집의 특례) ①~②(현행과 같음) ③ <u>국가적 비상사태, 전염병 및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서면총회로 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 다만 중앙회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u></p> <p>제36조(의결정족수) ①총회는 <u>의사정족수에 따라</u> 개최하고 <u>참석 구성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u></p> <p>제36조의 1(의사정족수) <u>각급 총회의 의사정족수는 다음과 같이 한다.</u></p>

현행	개정안
<p>제37조(위임규정) ①총회를 구성하는 <u>회원 또는 대의원</u>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대리인에게 해당 총회의 출석 권한을 위임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p> <p>②(생략)</p> <p>제54조(사무총장) ①~②(생략)</p> <p>③사무총장은 별정직으로 하고 임기는 <u>3년</u>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p> <p>제56조(표창) 임원 및 회원 또는 직원으로서 법인의 목적수행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자는 <u>이사회</u>의 의결을 얻어 <u>중앙회장이 표창</u> 한다.</p> <p>제57조(징계대상) ①임원 및 <u>회원</u>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징계한다.</p> <p>1. ~ 8.(생략)</p> <p>②(생략)</p> <p>제60조(징계의 관할) ①(생략)</p> <p>1.중앙징계위원회는 중앙회 임원 및 도지</p>	<p>1.<u>중앙회, 도지회</u>는 재적구성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한다.</p> <p>2.<u>재적구성원이 100명이하 지회·지부</u>는 재적구성원 1/3이상 참석으로 개최한다.</p> <p>3.<u>재적구성원이 100명이상~300명이하 지회·지부</u>는 재적구성원 1/4이상 참석으로 개최한다.</p> <p>4.<u>재적 구성원이 300명이상 지회·지부</u>는 재적 구성원 1/5 이상 참석으로 개최한다.</p> <p>5.<u>중앙회, 도지회</u>를 제외하고 위임은 인정하지 아니한다.</p> <p>제37조(위임규정) ①총회를 구성하는 <u>대의원</u>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대리인에게 해당 총회의 출석 권한을 위임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p> <p>②(현행과 같음)</p> <p>제54조(사무총장) ①~②(현행과 같음)</p> <p>③사무총장은 별정직으로 하고 임기는 <u>4년</u>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p> <p>제56조(표창) 임원 및 회원 또는 직원으로서 법인의 목적수행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자는 <u>중앙회장이 표창</u>하며 <u>관련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정</u>으로 정한다.</p> <p>제57조(징계대상) ①임원 및 <u>회원 또는 직원</u>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징계한다.</p> <p>1. ~ 8.(현행과 같음)</p> <p>②(현행과 같음)</p> <p>제60조(징계의 관할) ①(현행과 같음)</p> <p>1.-----</p>

